

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(안)검토보고서

● 검토의견

본 제정조례(안)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목적과 용자대상이 동일함에도 재원 및 이자율등이 이원화 되어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가구당 용자 지원액이 최고 500만원이하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 지원 효과가 없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금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행 이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(조례 제50호)를 폐지하고,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